

2014.12.29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 안내 '경정청구기간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 주요내용

1.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 ▶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8조의4 제1항
-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다만,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납세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

2.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 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 제22조 제1항
- ▶ 시행일 :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 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 ▶ 제86조 및 제87조
- ▶ 시행일 :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하 상세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